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현장심사 등을 적정하게"를 "현장심사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인증대상 소방장비 등"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파괴된"을 "제품심사로 인하여 파괴된"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품질설명서(품질관리에 대한 방침을 명시한 문서)

제5조제4항제1호 중 "관계 없이"를 "관계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3의"를 "제1호의 항목을 제외하고"로, "판정한다"를 "판정하고, 5개 이하이면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한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적합한 것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다.

4. 제3호의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공기호흡기는 8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는 60일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의 보완 기간,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 기간은 제1항의 처리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별표1]의 하나의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대하여 복수의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 인증기관은 소방청장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규칙 제10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인증기관의 인증운영) ①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 제13조, 영 제12조

· 제13조 · 제15조 · 제17조제2항 ·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5항과 관련하여, 법 · 영 ·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별표1]의 하나의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대하여 복수의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정하기 전에 소방청 · 인증기관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장비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구성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서류심사"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품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품심사"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품심사용 재료(이하 "견본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소방장비의 구조·기능·성상 및 성능 등이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심사"란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의 제조시설·시험시설 및 보유인력과 품질관리체계가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소방장비)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 및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견본품의 제출) ① 인증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기관은 제품심사가 끝난 후 제1항의 견본품을 인증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견본품이 제품심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현장심사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현장심사에 필요한 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현황
2. 대표자 서약서
3. 주요 인력현황
4. 시험시설 보유현황(해당 소방장비에 한정됨)
5.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 소방장비에 한정됨)
6. 품질설명서(품질관리에 대한 방침을 명시한 문서)
7. 자체검사 운영절차서
8.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현장심사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별표 3의 평가결과 비교란에 "중"으로 표시된 항목이 1개 이상 부적합한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2. 제1호의 항목을 제외하고 부적합 항목이 6개 이상이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고, 5개 이하이면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한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제2호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다.

4. 제3호의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시험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인증의 처리기간) ① 인증기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신청자에게 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단, 공기호흡기는 8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는 60일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의 보완 기간,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 기간은 제1항의 처리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인증의 결과 통보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번호 부여 및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의2(인증번호 부여의 방법) 소방청장은 인증번호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하나의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대하여 복수의 인증기관이 있

는 경우에는 각 인증기관별로 인증번호의 발급 범위를 정해 주어야 한다.

제8조(인증수수료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에게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분석시험 등 특수시험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시험비
2. 시험을 위하여 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
3. 소화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료비
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비

③ 인증기관은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1. 서류심사: 별표 7의 제2호
2. 제품심사: 별표 7의 제3호에 따라 보완 시험 항목의 수수료
3. 현장심사: 별표 7의 제6호다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용은 총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비용
2. 정산(精算) 후 남는 비용 및 실비
3.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비용 및 실비

제9조(인증기관의 시험설비)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시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인증기관의 인증운영) ①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 제13조, 영 제12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2항·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5항과 관련하여, 법·영·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키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범위 별표1
2.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 견본품 수량 별표2
3.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기준표 별표3
4. 제5조제5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시험시설기준 별표4
5. 제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시험설비기준 별표5

부 칙 <제2019-59호,2019.12.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54호,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고시 제3조 별표 1에 따라 인증대상 소방장비별로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고시 제3조 별표 1에 따라 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4-4호, 2024. 02.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증대상 소방장비

(제3조 관련)

구 분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	인증대상 소방장비	비고
1	소방자동차류	1. 소방펌프차 2. 소방고가차 3. 소방물탱크차 4. 소방화학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소형사다리차 7. 특수구급차	
2	섬유(피복)류	1. 방화복 2. 방화두건 3. 방화장갑	
3	기계류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4	전기/전자류	사이렌	
5	호흡기류	공기호흡기	
6	안전모류	1. 안전헬멧 2. 방화헬멧	
7	안전화류	방화신발	

소방장비 견본품 수량

(제4조제1항 관련)

장 비 명	견본품의 종류	수량
소방펌프차	완성품	1개
	인장강도 시험편 등	각 4개
소방고가차	완성품	1개
	인장강도 시험편 등	각 4개
소방물탱크차	완성품	1개
	인장강도 시험편 등	각 4개
소방화학차	완성품	1개
	인장강도 시험편 등	각 4개
구조차	완성품	1개
	인장강도 시험편 등	각 4개
소형사다리차	완성품	1개
	인장강도 시험편 등	각 4개
특수구급차	완성품	1개
	내식 시험편 등	각 4개
방화복	완성품	호수별 1착
	내열성능 시험편 등	각 5개
방화두건	완성품	23개
	내열성능 시험편	각 5개
	내수축성능 시험편	각 5개
방화장갑	완성품	58켤레
	불꽃열 방호 성능 시험편	3개
	복사열 방호 성능 시험편	3개
	불꽃 및 복사열 방호성능 시험편	3개
	접촉열 차단성능 시험편	6개
	내열성능 시험편	3개
	마모저항성능 시험편	3개
	절단저항성능 시험편	6개
	인열강도성능 시험편	5개
	궤뿔림저항성능 시험편	4개
	수분침투저항성능 시험편	5개
	용액침투저항성능 시험편	12개
	내약품성능 시험편	12개
	바이러스 침투 저항성능	3개

	시험편(선택적 사항)	
	투습성능 시험편	3개
	발수성능 시험편	3개
	편물재질의 파열강도성능 시험편	10개
	슬기강도성능 시험편	5개
	섬유혼용률성능 시험편	2개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완성품	1개
	내식 시험편	각 1개
소방용 사이렌	완성품	4개
소방용 공기호흡기	완성품	5 세트
	고무인장강도 시험편 등	각 4개
소방용 안전헬멧	완성품	19개
	안면렌즈(안면보호대)	7개
	부분품(모체, 턱끈)	1개
	반사성능 시험편	1개
	내식 시험편	재료별 1개
방화헬멧	완성품	27개
	안면렌즈(안면보호대)	8개
	반사성능 시험편	1개
	난연성능Ⅰ 부분품(모체, 안면렌즈(안면보호대))	각 3개
	난연성능Ⅱ 시험편 (물받이(귀덮개), 턱끈, 버클)	각 5개
	열방호성능 시험편 (물받이(귀덮개))	3개
방화신발	완성품	33켤레
	복사열성능 시험편 (앞날개, 뒷날개)	각 5개
	인열강도 시험편 (갑피/안감/겔창(가죽제), 안감/겔창(고무제))	각 5개
	인장강도 시험편	5개
	내마모성 시험편 (앞날개, 뒷날개, 자리 부분의 안감)	각 5개

현장심사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심 사 기 준	평 가 결 과		
			적합	부적합	비고
[1] 품질 경영 관리	가) 품질경영 시스템	1.1 대표자의 품질경영 의지를 나타내는 “품질방침” 및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인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작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1.2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품질문서(매뉴얼, 절차서 및 작업표준 또는 작업지침서 등)를 체계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중)
		1.3 품질경영시스템의 유효성 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문서의 제·개정 등을 통하여 개선하고 책임자가 승인한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4 품질문서는 규정된 배포대상자에게 항상 최신 문서로 배포 및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5 인력 및 제조설비 등 품질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변경절차를 문서로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6 인증신청자가 운영 중인 품질관리시스템은 인정신청일의 전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축되어야 하고,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른 운영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조직 및 인력	1.7 품질관리와 생산업무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관련 직원의 윤리서약서를 문서로 만들어 보존하여야 한다.			
		1.8 품질관리 및 생산업무 담당 직원이 충분한 이해와 숙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교육 훈련을 규정화하고 계획 및 실행결과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9 시험·검사 등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직무기술서 및 직원 이력카드 등의 자격인증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10 품질관리 및 생산업무 전담인력을 갖추고 개인별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 전담인력은 소방장비 업무 경력이 2년(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한 당해 기업체에서 소방장비 인증과 관련된 재직경력 6개월 이상 포함) 이상이고, 관련 교육 이수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구 분		심 사 기 준	평 가 결 과		
			적합	부적합	비고
	다) 기록 및 문서관리	1.11 제조공정 및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규격 등 모든 기술문서는 최신 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기록(각종 대장, 파일, 서류 등) 및 문서(기술문서, 외부 출처문서 등)는 식별, 검색, 보관, 폐기 등의 규정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3년 이상의 보존 기간을 설정하여 관리대장에 의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설 계	가) 설계	2.1 생산에 적용되는 설계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승인·변경 등의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2 공정관리계획서, 작업지침서, 공정별 합격 기준 등 제조공정 관련 기록물의 작성·승인·변경 등의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3] 구 매 및 생 산	가) 구매	3.1 구매품에 대한 합리적인 검수 기준을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외주업체 관리	3.2 부품 일부를 제조·납품하는 외주업체에 대한 자격 및 품질관리 평가기준,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화하고 평가 및 관리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3.3 중요 외주품 및 공급자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한 외주품을 생산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 제조설비 및 장비	3.4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 및 장비를 보유하고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소방자동차는 제조에 필요한 시설면적은 300㎡ 이상 이어야 하며, 천장크레인(2t 이상), 설계 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중)
		3.5 중요 제조설비 및 장비의 사용 설명서와 안전수칙을 작성·비치하고 주기적인 교육 등에 활용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6 제조설비 및 장비의 구입, 사용, 점검, 수리, 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화하고 이력 등의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3.7 제조설비 및 장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표시하고 관리 절차를 규정화하여 정상 가동상태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의 경우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3.8 중요 제조설비 및 장비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을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구 분		심 사 기 준	평 가 결 과		
			적합	부적합	비고
	라) 생산	3.9 생산공정 합리화를 위한 공정관리규정 (작업지침서, 작업표준, 작업지도서 등) 및 공정별 합격 판정 기준을 최신 문서로 규정화하여야 한다.			(중)
		3.10 생산설비, 생산품 및 불량품에 대한 식별표시를 명확히 하고 정상제품과 불량제품을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11 구조해석(소방고가차에 한한다), 용접, 전기 등 특수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은 경력 및 자격이 부여된 작업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12 부속품 및 완성품의 효과적인 보관·보존·재고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규정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3.13 완성품의 생산 및 판매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14 주요공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상의 문제점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자 체 검 사 체 계	가) 자체검 사	4.1 검사방법 및 합격 수준 등을 규정화하고 자체품질검사시스템을 통해 시험·검사결과 등 증거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중)
		4.2 시험·검사제품의 취급·운반·보관 및 부적합·불량제품에 대하여 원인파악 등 처리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4.3 시험·검사자를 지정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중)
		4.4 시험실별 환경 유지를 위한 온도 및 습도조건을 규정화하고 시험실 환경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5 시험 일부를 외부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시험기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활용하는 경우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화하고 평가 등의 선정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4.6 중요 제조공정 단계별로 제품 검사 및 적합성 판단 절차를 규정화하고, 불량품의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조치 및 품질개선 활동의 증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4.7 해당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인증대상 소방장비별, 인증번호별로 년 1회 이상 관련 기준의 모든 시험방법에 따라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구 분		심 사 기 준	평 가 결 과		
			적합	부적합	비고
	나) 시험설비 및 장비	4.8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정을 통한 측정의 유효성과 정기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가동·유지·관리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중)
		4.9 주요 시험·검사장비의 사용 설명서 등 사용기준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4.10 기기의 구입, 사용, 점검, 수리, 폐기 등 관리절차를 규정화하고 기기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4.11 주요 시험설비 및 장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 방법 등 관리절차를 규정화하고, 운영 등의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 품질 개선 활동	가) 시정 및 예 방 조 치	5.1 생산공정 검토와 제품검사의 결과에 따른 불량원인 개선과 내부심사와 경영검토에 따른 부적합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2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에는 발견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적합 사항, 조치요구기한 및 조치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5.3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보고서에는 부적합 원인분석, 개선결과, 잠재적 원인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내부심 사	5.4 연 1회 이상의 정기내부심사를 실시하고, 조직의 변동 등 품질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특별내부심사를 하여야 한다.			
		5.5 내부심사는 심사받는 부서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고, 심사 자격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5.6 내부심사를 위한 계획수립, 실행(심사내용), 결과보고의 방법과 절차는 규정화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5.7 품질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심사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 분		심 사 기 준	평 가 결 과		
			적합	부적합	비고
	다) 경영검토	5.8 경영검토 회의 내용에는 품질방침의 이행, 내부심사 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고객 불만 사항, 중요작업의 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9 품질경영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경영검토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화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경영검토를 하여야 한다.			
[6] 인 증 표 시 및 품 질 의 안 전 성	가) 인증표시	6.1 인증표시의 관리(수령, 불출, 사용, 보관 및 반납, 오 사용, 훼손, 도난 등) 사항을 규정화하고, 대표자가 지정한 직원에 의해 관련된 기록이 작성 및 보존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에서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확인되어야 한다.			(중)
		6.2 인증표시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인증표시의 관리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의 안정성	6.3 생산 중 결함 또는 A/S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는 기록으로 보존되어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중)
		6.4 고객과 직원의 불만 접수사항에 대한 현황관리, 분석 결과, 예방대책 강구, 조치결과의 회신 및 추적관리 실적 등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6.5 제품의 결함, 제품 불량사고 및 부적합품 유통방지를 위한 사안별 조치계획이 규정화되어 관리하여야 한다.			
	※ (중)표시의 심사항목은 심사결과 1개 이상의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는 부적합 처리됨				

시험시설기준

(제5조제5항 관련)

1.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시험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펌프차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 고
버니어캘리퍼스	- (0~150) mm 이상 측정이 가능한 것 (최소 눈금 단위 0.05 mm 이하)	1개	○	
기압계	- 대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정류통	- 내경 : (63.5~65) mm - 전체 길이 : (230~250) mm	1개		
피토관	- 방수노즐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압력계	- 정류통 피토관 송수압 1.5배	1개		
진공계	- (0~760) mmHg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회전계	- (6~99999) rpm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수압시험기	- 펌프 송수압력 1.5배	1조		
흡수관	- 해당 흡수구 규격에 적합할 것	필요수		
토크메타	- 펌프효율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	
도막측정기	- 150 μ 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1 μ m 이하)	1대		
나사 게이지	- 해당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1조	○	
저수조	- 용량 20 m ³ 이상	1개		
측중량계	- 5톤 이상 측정 가능한 것(4개)	1조		
공기압 측정기	-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당도계	- 포 방출성능시험이 가능할 것	1개	○	
유량계	- 포 방출성능시험 및 압축공기포방출 성능시험이 가능할 것	필요수	○	
비틀림시험블록	- 높이 0.25 m 이상이며 블록 위에 정차가 가능할 것	필요수		
※ 당도계는 유량계를 보유한 경우 제외 가능				
※ 유량계는 차량에 압축공기포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				

나. 소방고가차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 고
버니어캘리퍼스	- (0~150) m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0.05 mm 이하)	1개	○	
회전계	- (6~99999) rpm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도막측정기	- 150 μ 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1 μ m 이하)	1대		
나사 게이지	- 해당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1조	○	
비파괴탐상기	- 용접상태 점검 가능	1대		
구조해석 장비	- 소방고가차 안전을 확인용	1대		
거리측정기	- 측정 거리 70m 이상, 렌즈 배율 2배 이상	1개		
축중량계	- 16톤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4개)	1조		
추	- 720kg (무게 단위 20kg)	1조		
디지털 각도계	- 측정범위 360°, 분해능 0.1°, 정밀도 0.3°	1개		
저울	- 당해 계량물의 1.5배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최소 눈금 단위 1 kg 이하)	1개	○	
공기압 측정기	-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비틀림시험블록	- 높이 0.25 m 이상이며 블록 위에 정차가 가능할 것	필요수		
※ 차량에 소방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가. 소방펌프차의 시험시설을 포함 것				

다. 소방물탱크차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 고
버니어캘리퍼스	- (0~150) m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0.05 mm 이하)	1개	○	
기압계	- 대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정류통	- 내경 : (63.5~65) mm - 전체 길이 : (230~250) mm	1개		
피토관	- 방수노즐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압력계	- 정류통 피토관 송수압 1.5배	1개		
진공계	- (0~760) mmHg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회전계	- (6~99999) rpm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수압시험기	- 펌프 송수압력 1.5배	1조		
흡수관	- 해당 흡수구 규격에 적합할 것	필요수		
토크메타	- 펌프효율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	
도막측정기	- 150 μ 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1 μ m 이하)	1대		
나사 게이지	- 해당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1조	○	
저수조	- 용량 20 m ³ 이상	1개		
축중량계	- 5톤 이상 측정 가능한 것(4개)	1조		
공기압 측정기	-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비틀림시험블록	- 높이 0.25 m 이상이며 블록 위에 정차가 가능할 것	필요수		

라. 소방화학차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 고
버니어캘리퍼스	- (0~150) m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0.05 mm 이하)	1개	○	
기압계	- 대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정류통	- 내경 : (63.5~65) mm - 전체 길이 : (230~250) mm	1개		
피토관	- 2MPa 이상 가능할 것	1개		
압력계	- 정류통 피토관 송수압 1.5배	1개		
진공계	- (0~760) mmHg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회전계	- (6~99999) rpm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수압시험기	- 펌프 송수압력 1.5배	1조		
흡수관	- 해당 흡수구 규격에 적합할 것	필요수		
토크메타	- 펌프 효율측정이 가능할 것	1대	○	
도막측정기	- 150 μ 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1 μ m 이하)	1대		
나사 게이지	- 해당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1조	○	
저수조	- 용량 20 m ³ 이상	1개		
축중량계	- 모든 축중 및 윤중 측정이 가능할 것	필요수	○	
공기압 측정기	-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당도계	- 포 방출성능시험이 가능할 것	1개	○	
유량계	- 포 방출성능시험 및 압축공기포 방출성능시험이 가 능할 것	필요수	○	
비틀림시험블록	- 높이 0.25 m 이상이며 블록 위에 정차가 가능할 것	필요수		

※ 당도계는 유량계를 보유한 경우 제외 가능
 ※ 유량계는 차량에 압축공기포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

마. 구조차(크레인, 전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 고
버니어캘리퍼스	- (0~150) m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0.05 mm 이하)	1개	○	
온도계 (비접촉식)	- (-18~275) °C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회전계	- (6~99999) rpm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저울	- 당해 계량물의 1.5배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최소 눈금 단위 1 kg 이하)	1개	○	
추	- 크레인 정격하중의 1.1배 이상일 것 - 추의 무게는 케이스, 무게추, 체인 등 부속품을 포함 한 것	필요수		
축중량계	- 모든 축중 및 윤중 측정이 가능할 것	필요수	○	
공기압 측정기	-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로드셀	- 크레인 및 윈치 정격하중의 1.1배 이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1개	○	
도막측정기	- 150 μ 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1 μ m 이하)	1대		
디지털 각도계	- 360°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0.1°)	1개	○	
비틀림시험블록	- 높이 0.25 m 이상이며 블록 위에 정차가 가능할 것	필요수		

바. 소형사다리차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버니어캘리퍼스	- (0~150) m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0.05 mm 이하)	1개	○	
기압계	- 대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회전계	- (6~99999) rpm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도막측정기	- 도막두께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나사 게이지	- 해당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1조	○	
저수조	- 용량 20 m ³ 이상	1개		
비파괴탐상기	- 용접상태의 점검이 가능할 것	1대		
구조해석 장비	- 소형사다리차 안전을 확인이 가능할 것	1대		
거리측정기	- 70 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축중량계	- 모든 축중 및 윤중 측정이 가능할 것 - 지면반력 측정이 가능할 것	필요수	○	
추	- 720 kg (무게 단위 20 kg 이하)	1조		
저울	- 당해 계량물의 1.5배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1 kg 이하)	1개	○	
디지털 각도계	- 360° 측정이 가능할 것(최소 눈금 단위 0.1°)	1개	○	
공기압 측정기	-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가능할 것	1개		
비틀림시험블록	- 높이 0.25 m 이상이며 블록 위에 정차가 가능할 것	필요수		
※ 차량에 소방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가. 소방펌프차의 시험시설을 포함 것				

사. 특수구급차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버니어캘리퍼스	- (0~150) m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0.05 mm 이하)	1개	○	
거리측정기	- 20 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저울	- 당해 계량물의 1.5배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1 kg 이하)	1개	○	
도막측정기	- 도막두께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추	- 주들것 정격하중의 1.2배 이상 (무게 단위 20 kg 이하)	필요수		
조도계	- 환자실 실내등의 밝기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	
소음계	- (40~130) dB(A)까지 측정 가능할 것 (최소 단위 1 dB 이하)	1대	○	
염수분무 시험기	- KS D 9502에 따른 시험이 가능할 것	1대		☆
연소 시험기	- 기본규격 중 "내장재의 연소 성능시험"이 가능할 것	1대		☆

아. 방화복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 고
버니어캘리퍼스	- (0~150) mm 이상 측정 가능한 것 (최소 눈금 단위 0.01 mm 이하)	1개	○	
곤은자 및 줄자	- 방화복 치수 및 각 부위 측정에 적합할 것(최소 단위 1 mm)	각 1개	○	
저울	- 방화복의 질량 측정에 적합할 것(최소 단위 0.01 g)	1대	○	
난연성능 시험기	- KS K ISO 15025에 적합할 것	1대		☆
항온기	- (상온 ~ 265) °C 이상의 것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 할 것(최소 단위 1 °C)	1대	○	☆
습윤저항성 시험기	- KS K ISO 4920에 적합할 것	1대		☆
내수도 시험기	- KS K ISO 811에 적합할 것	1대		☆
불꽃열 방호성능 시험기	- KS K ISO 9151에 적합할 것	1대		☆
복사열 방호성능 시험기	- KS K ISO 6942에 적합할 것	1대		☆
세탁기	- KS K ISO 6330의 세탁절차 A형 중 6 N에 적합한 것	1대		☆
만능 재료 시험기	- 기본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이 가능할 것	1대	○	☆
투습저항성 시험기	- KS K ISO 11092에 적합할 것	1대		☆
염수분무 시험기	- KS D 9502에 적합할 것	1대		☆

자. 방화두건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곰은자 및 줄자	- 방화두건 치수 및 각 부위 측정에 적합할 것(최소단위 1 mm)	각 1개	○	
난연성능 시험기	- KS K ISO 15025에 적합할 것	1대		☆
항온기	- 상온 ~ 265 °C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최소 단위 1 °C)	1대	○	☆
불꽃열 방호성능 시험기	- KS K ISO 9151에 적합한 것	1대		☆
복사열 방호성능 시험기	- KS K ISO 6942에 적합한 것	1대		☆
세탁기	- KS K ISO 6330의 세탁절차 A형 중 6 N에 적합한 것	1대		☆

차. 방화장갑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버니어캘리퍼스	- (0~150) mm 이상 측정 가능한 것 (최소 눈금 단위 0.01 mm 이하)	1개	○	
곰은자 및 줄자	- 방화장갑 치수 및 각 부위 측정에 적합할 것(최소 단위 1 mm)	각 1 개	○	
유연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유연성능시험이 가능할 것	1대		☆
항온기	- 상온 ~ 265 °C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최소 단위 1°C)	1대	○	☆
불꽃열 방호성능 시험기	- KS K ISO 9151에 적합한 것	1대		☆
복사열 방호성능 시험기	- KS K ISO 6942에 적합한 것	1대		☆
세탁기	- KS K ISO 6330의 세탁절차 A형 중 6 N에 적합한 것	1대		☆

카.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수압 시험기	- 시험압력의 1.5배 이상 가압이 가능한 것	1조	○	
기능시험장치	- 혼합물의 측정이 가능한 용량의 펌프, 시험배관유량계 등이 구비된 시험장치 - 연속운전시험 가능할 것 - 포수용액 포집기, 실린더	1대	○	
나사 게이지	- 해당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1조	○	
※ 수압 시험기의 교정대상은 압력계에 한함 ※ 기능시험장치의 교정대상은 유량계, 압력계에 한함				

타. 사이렌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디지털멀티메타	- 교류전압 및 전류, 직류전압 및 전류(mA), 저항 측정이 가능 할 것	1개	○	
버니어캘리퍼스	- (0~300) m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0.05 mm 이하)	1개	○	
줄자	- 2 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음향시험장치 (간이 무향실)	- 1.5 m 거리에서 음량 측정이 가능할 것 - 내부에 흡음재가 부착된 구조일 것	1대		
소음계	- (40~130) dB(A)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단위 1 dB 이하)	1대	○	
초시계	- 60초의 시간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직류전압 공급장치	- 해당 사이렌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해당 사이렌 정격전압의 $\pm 25\%$ 이상으로 공급전압을 변동시 킬 수 있는 것	1대		
절연저항계	- DC 500 V	1대	○	
절연내력 시험기	- AC (0~3,000) V 조정이 가능할 것 - 허용 누설전류를 1 mA로 조정이 가능할 것	1대	○	

파. 공기호흡기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지시압력계	- 20 MPa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 최소단위 1 MPa 이하	3개	○	
저울	- 20 kg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 최소단위 10 g 이하	1개	○	
시야측정기	- 좌우 : 90°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 상하 : 90°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인두	- 크기 : (220 × 155) mm	3개		
나사게이지	- 해당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각 1개	○	
고무인장 시험기	- 4.9 kN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	☆
항온기	- 150 °C 이상 온도 유지가 가능할 것 - 최소단위 1 °C 이하	1대	○	
저온기	- -30 °C 이하 온도 유지가 가능할 것 - 최소단위 1 °C 이하	1대	○	
기밀성, 작동성, 호기저항등 시험기	- 유량 : (0 ~ 200) L/min 측정이 가능할 것 - (최소누금 : 1 L/min 이하)	각 1대		
공기유량계	- (0 ~ 200) L/min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 최소누금 1 L 이하	1대		
소음계	- (40 ~ 130) dB 측정이 가능할 것 - 최소단위 1 dB 이하	1대	○	
표준체	- 치수 125 μm - 치수 300 μm	각 1개		
표면마모저항 시험기	- 연삭제 400 g 이 적재 가능할 것 - (60 ~ 80) g/min 낙하시킬 수 있을 것	1대		☆
강구	- 지름 22 mm, 중량 45 g 의 원형일 것	3개		
공기충전기	- 30 MPa 이상으로 공기 충전이 가능할 것	1대		
침수 시험기	- 수조 깊이 1 m 이상	1대		
주파수 측정기	- (2 000 ~ 4 000) Hz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	
급기호스 강도 시험기	- 급기호스를 고정할 수 있는 원판(Ø100)으로, 50 N의 하중을 가할 수 있을 것	1대		
※ 항온기 및 저온기의 온도 범위가 규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검용사용 가능				

하. 안전헬멧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 고
저울	- 안전헬멧의 질량 측정에 적합할 것 (최소눈금 단위 1 g 이하)	1대	○	
충격흡수성 및 내관통성시험기	- 기본규격의 충격흡수성 시험 및 내관통 시험이 가능 할 것	1대		
고정장치 이탈 시험기	- 기본규격의 고정장치 이탈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턱끈강도 시험기	- 기본규격의 턱끈강도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턱끈풀림 시험기	- 기본규격의 턱끈풀림시험이 가능할 것	1대		☆
내전압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내전압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항온기	- (-20 ~ 100)℃까지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최소눈금단위 1 ℃이하)	1대	○	
난연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난연시험이 가능할 것	1대		☆
측면변형 시험기	- 기본규격의 측면변형시험이 가능할 것	1대		
굴절력 시험기	- 기본규격의 굴절력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시야확보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시야확보시험이 가능할 것	1대		
보호범위 시험장치	- 기본규격의 보호범위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표면검사 시험장치	- 기본규격의 표면검사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충격강도 시험기	- 직경 22 mm, 중량 44 g의 강구를 1.3 m 이상의 높이 에서 자유 낙하시킬 수 있는 것	1대		
※ 내전압 시험기는 타입1 에 한함 ※ 굴절력시험기, 시야확보성능시험기, 보호범위 시험장치, 표면검사 시험장치, 충격강도 시험기는 안면보호대 및 안면렌즈 장착 타입에 한함				

거. 방화헬멧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 고
저울	- 방화헬멧의 질량 측정에 적합할 것 (최소눈금 단위 1 g 이하)	1대	○	
충격흡수성 및 내관통성시험기	- 기본규격의 충격흡수성 시험 및 내관통 시험이 가능 할 것	1대		
고정장치 이탈 시험기	- 기본규격의 고정장치 이탈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항온항습기	- (상온 ~ 30) °C까지 온도조절가능 한 것(최소눈금단 위 1°C 이하) - 항습 (25 ~ 50) %(최소눈금단위 1 % 이하)	1대	○	
항온기	- (-40 ~ 270) °C까지 온도조절가능 한 것 (최소눈금단위 1 °C 이하)	1대	○	
난연성능 시험기Ⅰ	- 기본규격의 난연성능시험Ⅰ이 가능할 것	1대		☆
난연성능 시험기Ⅱ	- 기본규격의 난연성능시험Ⅱ가 가능할 것	1대		☆
시야측정기	- 기본규격의 시야측정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턱끈강도 시험기	- 기본규격의 턱끈강도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인두	- 기본규격의 표준머리모형에 적합할 것	3개		
안면렌즈(안면보호대) 강도시험기	- 직경 22 mm, 중량 44g의 강구를 1.3 m 이상의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킬 수 있는 것	1대		
내전압시험기	- 기본규격의 내전압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턱끈 풀림시험기	- 기본규격의 턱끈풀림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측면변형시험기	- 기본규격의 측면변형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안면렌즈(안면보호대) 복사열 저항 시험기	- 기본규격의 안면렌즈(안면보호대) 복사열저항시험이 가능할 것	1대		
※ 항온항습기 및 항온기의 온도범위가 규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겸용사용 가능				

너. 방화신발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버니어캘리퍼스	- (0~150) mm 이상 측정 가능한 것 (최소 눈금 단위 0.05 mm 이하)	1개	○	
줄자 및 곧은자	- 방화신발 치수 및 각 부위 측정에 적합할 것 (최소 단위 1 mm)	1개	○	
항온기	- 상온 ~ 265 °C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최소 단위 1°C)	1대	○	☆
난연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난연성시험이 가능할 것	1대		☆
복사열 방호성능 시험기	- KS K ISO 6942에 적합할 것	1대		☆

2. 교정주기 및 보유면제 대상

가. 제1호에 따른 기준에서 교정대상에 “○”표시가 되어있는 시험시설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교정주기(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넘지 않을 것)마다 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아 관리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기준에서 비고란에 “☆” 표시가 되어있는 시험시설은 외부시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외부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시험시설 기준 품목 중 인증기관이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은 갖춘 것으로 본다.

시험설비기준

(제9조 관련)

1. 인증기관의 시험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자동차류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기	- 35°이상 경사시험 가능할 것 - 시험하중 40 ton 이상	1개		
공기압 측정기	-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비틀림 시험 블록	- 횡축블록 높이 0.25 m 이상 길이 30 m - 지그재그 요철 높이 0.1 m 이상 길이 25 m	2개		
측중량계	- 16톤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1조	○	
등판능력 시험 경사로	- 구배 18 % 경사로	1개		
기압계	- 대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정류통	- 내경 : (63.5~65) mm - 전체 길이 : (230~250) mm	1개		
피토관	- 방수노즐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압력계	- 정류통 및 피토관 송수압의 1.5배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2개	○	
	- (0~0.1) MPa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0.005 MPa 이하)	1개	○	
진공계	- (0~760) mmHg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회전계	- (6~99999) rpm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수압 시험기	- 3.0 MPa 이상 가압이 가능할 것	1조		

흡수관	- 75A, 100A, 125A, 150A	필요수		
토크메타	- 펌프효율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	
나사 게이지	- 소방나사 규격에 적합할 것 (링게이지 65A, 75A, 100A, 플러그게이지 65A)	1조	○	
저수조	- 용량 20m³ 이상	1개		
포 농도측정기	- 포 농도측정기 및 포 채집기	1조		
거리측정기	- 측정 거리 70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무게 추	- 720 kg (무게 단위 20 kg 이하)	1조		
디지털각도계	- 360° 측정이 가능할 것(최소 눈금 단위 0.1°)	1개	○	
온도계 (비접촉식)	- (-18~275) °C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저울	- 당해 계량물의 1.5배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 최소눈금단위(1kg)	1개	○	
로드셀	- 10 ton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도막측정기	- 도막두께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	
휴대용 성분 분석기	-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조성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염수분무 시험기	- KS D 9502에 따른 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연소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내장재의 연소성능 시험이 가능할 것	1대		☆
조도계	- 환자실 실내등의 밝기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	
소음계	- (40~130) dB(A)까지 측정 가능할 것 (최소 단위 1 dB 이하)	1대	○	

나. 섬유(피복)류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버니어캘리퍼스	- (0~150) mm 이상 측정 가능한 것(최소 눈금 단위 0.01 mm 이하)	1개	○	
저울	- 섬유(피복류) 질량 측정에 적합할 것(최소 단위 0.01 g)	1대	○	
줄자 및 곧은자	- 섬유(피복류) 치수 및 각 부위 측정에 적합할 것 (최소 단위 1 mm)	각 1개	○	
세탁기	- KS K ISO 6330의 세탁절차 A형 중 6 N에 적합한 것	1대		
건조기	- KS K ISO 6330의 건조절차 F에 적합한 것	1대		
난연성능 시험기	- KS K ISO 15025에 적합할 것	1대		
항온기	- (상온 ~ 265) °C 이상의 것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할 것 (최소 단위 1 °C)	1대	○	
불꽃열 방호성능 시험기	- KS K ISO 9151에 적합할 것	1대		
복사열 방호성능 시험기	- KS K ISO 6942에 적합할 것	1대		
불꽃 및 복사열 방 호성능 시험기	- KS K ISO 17492에 적합할 것	1대		
압축 전도 내열성 시험기	- KS K ISO 12127-1에 적합할 것 - 14 kPa, 55 kPa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	1대		
만능재료 시험기	- 기본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이 가능할 것	1대	○	
습윤저항성 시험기	- KS K ISO 4920에 적합할 것	1대		
내수도 시험기	- KS K ISO 811에 적합할 것	1대		
액체 침투 저항성 시험기	- KS K ISO 13994에 적합할 것	1대		
투습 저항성 시험기	- KS K ISO 11092에 적합할 것	1대		
염수분무 시험기	- KS D 9502에 적합할 것	1대		
마네킹 시험기	- KS K ISO 13506에 적합할 것	1대		
분광측정기	- KS K ISO 20471의 색 측정에 적합할 것	1대		
재귀반사성능 시험기	- KS K ISO 20471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에 적합할 것	1대		

굴곡 시험기	- ISO 7854 방법 A에 적합할 것	1대		
저온굽힘 시험기	- KS M ISO 4675에 적합할 것	1대		
온도변화챔버	- (-30 ~ 50) °C 이상의 것으로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최소단위 1 °C)	1대	○	
섬유혼용률 시험기	- 기본규격의 섬유혼용률 시험에 적합할 것	1대		
접촉열 차단 시험기	- KS K ISO 12127-1에 적합할 것	1대		
마모저항성능 시험기	- KS K ISO 12947-2에 적합할 것	1대		
절단저항성능 시험기	- KS K ISO 13997에 적합할 것	1대		
궤뿔림저항성능 시험기	- KS K ISO 13996에 적합할 것	1대		
내약품성능 시험기	- KS K ISO 6530에 적합할 것	1대		
투습성능 시험기	- KS K 0594에 적합할 것	1대		
방수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방수성능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손놀림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손놀림성능 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착용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착용성능 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유연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유연성능 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파열강도 시험기 (볼버스팅법)	- ASTM D 6797에 적합할 것	1대		
파열강도 시험기(유압법)	- KS K ISO 13938-1에 적합할 것	1대		
가죽의 유해성 시험기	- KS M ISO 17075에 적합할 것	1대		
안면창 치수 유지 시험기	- 기본규격의 안면창 치수 유지 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타이머	- 최소단위 1 s	1대	○	
바이러스 침투 저항성능 시험기	- KS K ISO 16604에 적합할 것	1대		

※ 불꽃 및 복사열 방호성능 시험기는 불꽃열 방호성능 시험기와 복사열 방호성능 시험기를 보유한 경우 상호간 제외 가능

※ 항온기 및 온도변화챔버의 온도범위가 규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검용사용 가능

※ 압축전도내열성 시험기 및 접촉열 차단 시험기의 압력범위가 규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검용사용 가능

다. 기계류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수압 시험기	- 시험압력의 1.5배 이상 가압이 가능할 것	1조	○	
기능시험장치	- 혼합물의 측정이 가능한 용량의 펌프, 시험배관유량계 등이 구비된 시험장치 - 연속운전시험이 가능할 것 - 포수용액 포집기, 실린더	1대	○	
나사 게이지	- 해당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1조	○	
염수분무 시험기	- KS D 9502에 따른 시험이 가능할 것	1조		
암모니아 응력균열 시험기	- 기본규격의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이 가능할 것	1조		
※ 수압 시험기의 교정 대상은 압력계에 한함 ※ 기능시험장치의 교정 대상은 유량계, 압력계에 한함				

라. 전기/전자류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디지털멀티메타	- 교류전압 및 전류, 직류전압 및 전류(mA), 저항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	
버니어캘리퍼스	- (0~300) m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0.05 mm 이하)	1개	○	
줄자	- 2 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음향시험장치	- 1.5 m 거리에서 음량 측정이 가능할 것 - 내부에 흡음재가 부착된 구조일 것	1대		
소음계	- (40~130) dB(A)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단위 1 dB 이하)	1대	○	
초시계	- 60초의 시간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진동 시험기	- 기본규격의 진동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염수분무 시험기	- KS D 9502에 따른 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살수 시험기	- 기본규격의 살수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항온기	- (-20℃ ~ 100) ℃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1대	○	
항온항습기	- 상온 ~ 60 ℃까지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최소눈금단위 1℃ 이하) - 항습 (40 ~ 95) %(최소눈금단위 1 % 이하)	1대	○	
직류전압 공급장치	- 해당 소방장비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해당 소방장비 정격전압의 ±25% 이상으로 공급전압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것	1대		
절연저항계	- DC 500 V	1대	○	
절연내력 시험기	- AC (0~3,000) V 조정이 가능할 것 - 허용 누설전류를 1 mA로 조정이 가능할 것	1대	○	
※ 항온기 및 항온항습기의 온도범위가 규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검용사용 가능				

마. 호흡기류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지시압력계	- 20 MPa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 최소단위 1 MPa 이하	3개	○	
저울	- 20 kg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 최소단위 10 g 이하	1개	○	
시야측정기	- 좌우: 80° 이상 - 상하: 50° 이상	1대		
인두	- 크기 : (220 × 155) mm	3개		
나사게이지	- 해당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각 1개	○	
고무인장 시험기	- 4.9 kN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	
항온기	- 150 °C 이상 온도 유지가 가능할 것 - 최소단위 1 °C 이하	1대	○	
저온기	- -30 °C 이하 온도 유지가 가능할 것 - 최소단위 1 °C 이하	1대	○	
기밀성, 작동성, 호기저항등 시험기	- 유량 : (0 ~ 200) L/min 측정이 가능할 것 - (최소눈금 : 1 L/min 이하)	각 1대		
공기유량계	- (0 ~ 200) L/min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 최소눈금 1 L 이하	1대		
소음계	- (40 ~ 130) dB 측정이 가능할 것 - 최소단위 1 dB 이하	1대	○	
표준체	- 125 μm - 300 μm	각 1개		
표면마모저항 시험기	- 연삭제 400 g 이 적재 가능할 것 - (60 ~ 80) g/min 낙하시킬 수 있을 것	1대		
강구	- 지름 22 mm , 중량 45 g 의 원형일 것	3개		
공기충전기	- 30 MPa 이상으로 공기 충전이 가능할 것	1대		

침수 시험기	- 수조 깊이 1 m 이상	1대		
주파수 측정기	- (2,000 ~ 4,000) Hz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	
급기호스 강도 시험기	- 급기호스를 고정할 수 있는 원판($\varnothing 100$)으로, 50 N의 하중을 가할 수 있을 것	1대		
내연성 시험기	- 분젠버너 : 지름 (8.5 ~ 11.5) mm	1대		
연소 시험기	- 불꽃길이 38 mm	1대		
고무경도 시험기	- 스프링식(C형)	1대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 25 cycles/min - 2.0 L/stroke	1대		
복사열 저항성 시험기	- 복사열원 : (7.8 ~ 8.0) kW/m ² - 최소눈금 0.1 kW/m ²	1대		
불꽃 저항성 시험기	- 불꽃온도 : (950 $\pm$ 50) °C - 프로판가스유량 : (21 $\pm$ 0.5) L/min - 최소눈금 0.5 L/min	1대		
온도성능 시험기	- 호흡장치 • 25 cycles/min, 2.0 L/stroke • 40 cycles/min, 2.5 L/stroke - -30 °C 이하, 60 °C 이상 온도 조절이 가능할 것	1대		
실 사용성능 시험기	- 면적 3 m $\times$ 3 m $\times$ 2 m 이상 - -30 °C 이하, 24 °C 이상 온도 조절이 가능할 것 - 7 kg 나무 블록 - 50 kg 물체(로프에 연결이 가능할 것)	1대		
※ 항온기 및 저온기의 온도범위가 규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겸용사용 가능 ※ 온도성능 시험기, 항온기, 저온기는 중복 사용 가능				

바. 안전모류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저울	- 안전헬멧의 질량 측정에 적합할 것 (최소눈금 단위 1 g 이하)	1대	○	
줄자	- 2 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1개		
버니어캘리퍼스	- (0~300) m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0.05 mm 이하)	1개	○	
항온기	- 상온 ~ 300 °C 이상 시험에 적합할 것 (최소눈금단위 1 °C이하)	1대	○	
저온기	- 32 °C 이하 시험에 적합할 것 (최소단위 1 °C 이하)	1대	○	
항온 항습기	- 상온 ~ 60 °C 이상 시험에 적합할 것(최소눈금단위 1°C 이하) - 항습 (40 ~ 95) %(최소눈금단위 1 % 이하)	1대	○	
충격흡수성 및 내관통성 시험기	- 기본규격의 충격흡수성 시험 및 내관통 시험이 가능할 것	1대		
고정장치 이탈 시험기	- 기본규격의 고정장치 이탈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턱끈강도 시험기	- 기본규격의 턱끈강도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턱끈풀림 시험기	- 기본규격의 턱끈풀림시험이 가능할 것	1대		
내전압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내전압시험이 가능할 것	1대		
난연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난연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측면변형시험기	- 기본규격의 측면변형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염수분무 시험기	- KS D 9502에 따른 시험이 가능할 것	1대		

굴절력 시험기	- 기본규격의 굴절력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시야확보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시야확보시험이 가능할 것	1대		
보호범위 시험장치	- 기본규격의 보호범위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표면검사 시험장치	- 기본규격의 표면검사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충격강도 시험기	- 직경 22 mm, 중량 44 g의 강구를 1.3 m 이상의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킬 수 있는 것	1대		
가시광선투과율 시험기	- 기본규격의 가시광선투과율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표면마모저항 시험기	- 기본규격의 표면마모저항시험이 가능할 것	1대		
난연성 시험기Ⅰ	- 기본규격의 난연성시험Ⅰ이 가능할 것	1대		
난연성 시험기Ⅱ	- 기본규격의 난연성시험Ⅱ가 가능할 것	1대		
열방호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열방호성능시험이 가능할 것	1대		
복사열 저항 시험기	- 복사열량이 7 kW/m ² 이상 (최소조절단위 0.1 kW/m ²)	1대		
시야측정기	- 기본규격의 시야측정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평행도시험기	- 기본규격의 평행도시험이 가능할 것	1대		
※ 항온기, 저온기 및 항온항습기의 온도범위가 규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검용사용 가능				

사. 안전화류

품목	규격 및 성능	수량	교정 대상	비고
버니어캘리퍼스	- (0~150) mm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최소 눈금 단위 0.05 mm 이하)	1개	○	
줄자 및 곧은자	- 신발류 치수 및 각 부위 측정에 적합할 것 (최소 단위 1 mm)	1개	○	
저울	- 방화신발의 질량 측정에 적합할 것(최소눈금 단위 1 g 이하)	1대	○	
항온기	- 상온 ~ 265 °C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최소 단위 1°C)	1대	○	
미끄럼저항성 시험기	- KS M ISO 13287에 적합할 것	1대		
난연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난연성시험에 적합할 것	1대		
고온단열성 시험기	- 기본규격의 고온단열성시험에 적합할 것	1대		
복사열방호성능 시험기	- KS K ISO 6942에 적합할 것	1대		
내전도열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내전도열시험이 가능할 것	1대		
투습도 시험기	- 기본규격의 투습도시험이 가능할 것	1대		
내수성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내수성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인열강도 시험기	- 기본규격의 인열강도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인장성능 시험기	- 기본규격의 인장성능시험이 가능할 것	1대		
내관통성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내관통성시험이 가능할 것	1대		
내충격성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내충격성시험이 가능할 것	1대		
내압박성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내압박성시험이 가능할 것	1대		
내마모성 시험기	- 기본규격의 내마모성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절단방지성 시험기	- 기본규격의 절단방지성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전기저항 시험기	- 기본규격의 전기저항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성분분석 시험기	- 기본규격의 성분분석시험이 가능할 것	1대		
연료유에 대한 저항성 시험기	- 기본규격의 연료유에 대한 저항성시험이 가능할 것	1대		

2. 교정주기 및 보유면제 대상

제1호에 따른 기준에서 교정대상에 “○“표시가 되어있는 시험시설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교정주기(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넘지 않을 것)마다 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아 관리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증번호 부여 및 표시방법

(제7조제2항 관련)

장 비 명	인증번호	비 고
소방펌프차	KFAC펌프차 00 - △	- "00"은 인증년도 - "△"는 인증년도의 일련번호
소방고가차	KFAC고가차 00 - △	
소방물탱크차	KFAC물탱크차 00 - △	
소방화학차	KFAC화학차 00 - △	
구조차	KFAC구조차 00 - △	
소형사다리차	KFAC소형사다리차 00 - △	
특수구급차	KFAC특수구급차 00 - △	
방화복	KFAC방화복 00 - △	
방화두건	KFAC방화두건 00 - △	
방화장갑	KFAC방화장갑 00 - △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KFAC압축공기포소화장치 00 - △	
사이렌	KFAC사이렌 00 - △	
공기호흡기	KFAC공기호흡기 00 - △	
안전헬멧	KFAC안전헬멧 00 - △	
방화헬멧	KFAC방화헬멧 00 - △	
방화신발	KFAC방화신발 00 - △	

○ (인증표시) KFAC* (소방장비인증)

* Korea Fire-fighting Apparatus Certification



인증수수료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1. 인증수수료는 서류심사 및 제품심사, 현장심사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서류심사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이하 “노임단가”라 한다)에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제품심사 비용은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해당 시험항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시험항목별 비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에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 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 다.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 라.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4. 가목의 직접인건비는 연도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시기는 노임단가 조사 공표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5. 제2호에서 산출된 시험항목별 비용의 소숫점 이하는 버린 비용으로 한다.
6. 현장심사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 가. 심사: 기타 부문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심사원(3명)×심사일(2일)+출장비(3명)
 - 나. 심사의 일부생략: 기타 부문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심사원(3명)×심사일(1일) +출장비(3명)
 - 다. 보완심사: 기타 부문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심사원(2명)×심사일(1일)+출장비(2명)

일 반 현 황

신 청 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설 립 일 자			설 립 형 태				
주 요 사 업 분 야							
주 요 생 산 품							
제 품 개 발 실 적							
타기관 인증보유 현황							
인력현황	구 분		박 사	석사/학사	기 타	계	
	직 종						
	계						

대 표 자 서 약 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당사는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한 현장심사를 신청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품질관리체계 등의 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이행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회사명)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주요인력현황

(1) 대표자

직 위	성 명	취임년도	최종학력	전화번호	FAX

(2) 품질관리(부서명 :)

직 위	성 명	입사년도	최종학력	주요 담당업무	자격증

(3) 생산(부서명 :)

직 위	성 명	입사년도	최종학력	주요 담당업무	자격증

